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6두3091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윤태중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6. 4. 9. 선고 2025누8420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0.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의사인 원고는 2023. 1. 10. 생후 6개월의 영아 소외인(이하 '환아'라 한다)에게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 헤파뮨 주사제(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를 접종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나. 피고는 2023. 7. 3. 원고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의료법(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25. 6. 20. 보건복지부령 제1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32) 다)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다. 서울행정법원은 2024. 4. 12. 이 사건 선행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3908),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24. 10. 10.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24누41634),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24. 12. 10. 원고에 대하여 재차 1개월 15일(처분기간 2025. 6. 2.부터 2025. 7. 16.)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가 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이를 정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의사가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경과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해당 의약품을 이용하는 사람의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의 지도에 따라 안전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를 현저히 배신하여 고도의 전문성과 직업윤리에 의해 뒷받침되는 의사의 직업적 위신을 크게 실추시키는 행위이고,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고의는 아니더라도 중대한 과실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구「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32) 다)에 따르면,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것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중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과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의료인에 대한 기대와 신뢰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진료행위를 의미하며, 진료행위가 의료법 등 관계 법령의 명문규정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이나 조리상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이나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4890 판결 참조).

이처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한 유형에 속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개념 및

범위가 포괄적, 추상적인 반면, 법령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중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경우에 한정되는 이상, 광의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모두가 곧바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된 진료행위의 내용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 및 개입 정도, 행위의 반복성, 행위로 인하여 공중보건 내지 환자 안전에 끼친 영향, 행위의 부적절성이 밝혀진 경위, 행위 후 행위자가 보인 태도와 사후조치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과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의료인에 대한 기대와 신뢰에 상당히 어긋나는 행위에 이르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는 있더라도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과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의료인에 대한 기대와 신뢰에 상당히 어긋나는 행위에 이를 만큼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정도의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이 사건 의약품의 유효기한인 2023. 1. 9.로부터 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실제로도 이 사건 의약품의 투여 후 환아에게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로부터 2시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의약품의 유

효기한이 도과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바로 환아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며 추후 재접종 등을 안내하였고, 마포구보건소의 사실조사 과정에서도 이 사건 위반행위 경위를 숨기지 않고 상세히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위반행위는 그 위반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원고가 오랜 기간 의업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제외하고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위반행위는 원고가 고의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의약품을 관리하는 직원의 분류과정상 실수가 개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구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주 심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마용주